

2014년 취업통계조사 협조문

사랑하는 졸업예정자 여러분!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졸업 후에도 영원한 성서인임을 잊지 마시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.

1. 조사대상 : 2013년 8월 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자 전체

2. 조사일정

·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(3주 단위로 조사)							·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			
							· 유지취업률 조사			
1차	2차	3차	4차	5차	6차	7차	8차	9차	10차	11차
1/24	2/14	3/7	3/28	4/18	5/9	5/30	9월 중	12월 중	'15년 3월 중	'15년 6월 중

3. 조사방법 : 휴대전화, 집전화, 이메일, 방문 등

4. 협조사항 : 대부분 국가기관DB와 연계되어 제출서류가 없으나, 음영표시된 항목은 **6월까지** 관련서류 제출바람

취업구분	세부항목	정의	협조사항
취업자	건강보험 직장가입자	조사 기준일*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	· 취업시 직장건강보험 가입여부 꼭 확인 · 조사 기준일 이전 퇴직시 즉시 회신
	교내취업자	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기관(산학협력단, 학교기업 등)에 1년 이상 계약한 자로써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자	· 채용공고 발표시 적극적으로 응시
	해외취업자	조사 기준일 당시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일하며, 91일 이상 고용계약한 자	· 출국 전후 센터와 긴밀한 소통 · 비자사본, 계약서 사본 6월 내로 제출 · 스마트폰, 이메일 활용 * 선교사는 불인정되나 선교센터직원은 인정
	영농업종사자	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업에 종사하는 졸업자	·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
진학자	국내전문대학	조사 기준일 당시 고등교육법(제2조)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(대학, 대학원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, 대학원대학)으로 진학한 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	* 학점은행제 또는 특정 학점인정기관(노동부 산학 직업훈련기관, 평생교육원 등)은 불인정
	국내대학		
	국내대학원		
	국외전문대학		
	국외대학	조사 기준일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규교육 기관에 진학한 자	· 출국 전후 센터와 긴밀한 소통 · 대개 9월 입학자가 많으며 입학허가서(I-20) 사본 제출: 스마트폰, 이메일 활용 · 9월 입학 후 재학증명서 사본 제출
국외대학원			
입대자		조사 기준일 당시 군 입대자	· 학사장교 및 부사관 중 입관 전 훈련생은 병무청(국방부) 증빙자료 제출
취업불가능자	수형자	조사 기준일 당시 수형자, 사망자, 해외이민자,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	· 해외이민자는 출국 전후 센터에 신고 · 장기입원자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
	사망자		
	해외이민자		
	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		
기타		조사 기준일 당시 취업, 진학, 입대, 취업불가능, 미상, 제외인정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	· 5월 30일까지 '기타'에서 탈출하기 · 센터에서 추천하는 단기취업 수용
미상		조사 기준일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	· '졸업생-센터-전공'간 원활한 소통 ∝ 취업률 * 미상 5% 이상이면 조사결과 신뢰도에 영향
제외인정자	의료급여 수급자	조사 기준일 당시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졸업자	· 의료급여수급자 확인은 보건복지부DB와 연계되거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미리 회신바람 *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(수급권자)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함 ·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은 군복무확인서 등 증빙서류 6월 내로 제출
	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	조사 기준일 당시 여자군인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훈련생 신분의 졸업자	
	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	조사 기준일 당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(울진비행원, 정석비행원) 교육훈련생	
	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	조사 기준일 당시 별도의 인정절차를 거쳐 제외 인정된 학과 졸업자	

* 조사 기준일은 6월 1일이나, 2014년의 경우 주일이므로 실제로 5월 30일(금)을 조사 기준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